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2. 31.(화)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석기, 사무관 천세창, 주무관 이호성 • ☎ (044)201-4504, 3358, 3359	
보 도 일 시		2020년 1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 [지원금액] 19년 대비 7.5~14.3% 인상(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5만 원)

-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선정기준)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 (임차급여 지원)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된다.('19년 36.5 → '20년 41.5만원)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수선급여 지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20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 괄호는 '19년 대비 증가액

-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18.10 83만 명 → '20.1 103만 명)

-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 복지정책과 천세창 사무관(☎ 044-201-3358), 이호성 주무관(☎ 044-201-33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가구수	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지급일 **임차가구**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